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49
----------	-------

발의연월일 : 2026. 6. 9.

발 의 자 : 조정훈 · 김용태 · 최수진  
박충권 · 서천호 · 김미애  
김장겸 · 임종득 · 김태호  
권영세 · 김기현 · 김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동일하게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이 학자금 상환 이자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

조의2제2항제7호).

법률 제 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7호 본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을 “고등교육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